

고등학교졸업 이하·전문대학·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
공시정보 범위, 공시횟수 및 그 시기(제63조의2제3항 관련)

공시정보 항목	공시횟수	공시시기
1. 평생교육시설의 명칭	연 1회	5월
2.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	연 1회	5월
3. 교육과정	연 1회	5월
4. 교육과정별 정원	연 1회	5월
5.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	연 1회	5월
6. 학습비	연 1회	5월
7. 평생교육시설 설립·운영자 명단 및 강사 명단	연 1회	5월

비고

1. “고등학교졸업 이하·전문대학·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”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,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,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(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),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한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,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, 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, 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38조에 따른 지식·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.
2. 제7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립·운영자 명단 및 강사 명단에는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명단을 포함한다.